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42 제출연월일 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·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,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60조 중 "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"을 "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"으로 한다.

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"을 "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을 "제1항 및 제3항"으로 한다.

제63조제3항 중 "제1항"을 "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 공업에 관하여 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 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"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본문 중 "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"를 "시장 ·군수·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 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 조제2항, 제57조제2항, 제60조, 제61조제2항·제3항 및 제63조제3항·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, 제57조제1항본문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6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영화업자의 신고 등) ①	제26조(영화업자의 신고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	<u>&lt;삭 제&gt;</u>
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	
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	
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	
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7조(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	제57조(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
고) ① (생 략)	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	<u>&lt;삭 제&gt;</u>
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	
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	
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	
<u>다.</u>	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신고	③ <u>제1항</u>
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	
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	
령으로 정한다.	<u>.</u>
제60조(신고증・등록증의 교부)	제60조(신고증·등록증의 교부)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<u>제57조</u>	<u>제57</u>
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	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
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	
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	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	
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	
부하여야 한다.	
제61조(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	제61조(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
경) ① (생 략)	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	<u>&lt;삭 제&gt;</u>
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	
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	
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	
<u>야 한다.</u>	
③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	3
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	변경신고를 받거나 변
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	<u> 경등록을 한</u>
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	
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	
야 한다.	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	④ <u>제1항 및 제3항</u>
에 따른 변경신고 · 변경등록의	
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	
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
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	
다.	<b>.</b>
제63조(영업의 승계) ①・② (생	제63조(영업의 승계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1</u>	③ <u>제58</u>

<u>항</u>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, 상속인, 합병으로 설립되거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・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, 상속일,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.

#### ⑤ (생략)
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지 ①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 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 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・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 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

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	-
시청제공업에 관하여 제1항	-
	-
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 제1	_
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디오물	
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	_
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	_
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-	-
	-
	-
	-
⑤ (현행과 같음)	
⑤ (현행과 같음) 세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	)
세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</u>	<u>}</u>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제69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63 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	3

인	u	어	는	, o		인	· 건	상호	ìQ	]	또	는
합	병	-	<u></u>	신	설되	目プ	니	- 4	존 :	숙	하	는
법	인	에	디	하	여	행	정	제:	재기	처	분	의
절:	차	를	크	급항	할	수	= (	있디	十.	Ţ	71	만,
양	수	인	• /	상글	흑인	Ţ	포는	<u>-</u>	합	병		후
신^	설	되	거١	+	존속	누ㅎ	누는	. 발	<u> </u>	j c	)	양
수	딬	드는	- हैं - 1	합병	형시	에	ユ	え	분	-	또	는
위	반	사	실-	슬	알기	<b>(</b> ] -	못형	한 :	경-	우	에	는
행.	정	제	재치	처분	분의	7	설치	를		숙	행	할
수	Ó	1 [	1									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